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합)○○기계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분쇄 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이 발생한 경우

(91-572호 91. 11. 26.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윤 ○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 처 분 청 :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합)○○기계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17.자 청

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애등급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합)○○기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6. 26.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동양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5. 24.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4급 9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평지 보행시에도 다리를 절고 심한 동통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애등급 제14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애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0. 25. 윤○○)
2. 답변서(1991. 10. . 원처분청)
3. 장애보상 청구서 사본(1991. 5. 28. 윤○○)
4. 장애급여 사정서 사본(1991. 6. 17.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8. 26.)
6. 진단서 사본(1991. 5. . 동양의원)
7. 소견서 사본(1991. 6. 원처분청 자문의)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합)○○기계 소속 제관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6. 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동양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5. 24. 치료 종결되었는 바 동양의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측 대퇴근 위축으로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호소하며 장시간 보행 및 구보시 슬관절의 동통을 호소함”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좌슬관절에 동통이 남은 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노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좌슬관절부에 당시 동통이 남은 정도의 장애로 인정되므로 장애등급 제14급 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적용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뿐 이를 취소할만한 타각적 소견이 없다.

○○(주) 기계운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제2, 4, 5수지 절단”이 발생한 경우

(91-586호 91. 11. 26.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이 ○ ○
 주소 : 김천시 신음동
 원 처 분 청 :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
 피 재 근 로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
 소속 : ○○(주)

주 문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7. 3.자 “이○○”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등급 제11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7. 3.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 3. 13.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제2, 4, 5수지 절단”으로 순천향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6. 25.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해를 “좌수 제2지 지골의 일부를 상실, 제4지 폐용, 제5지 상실한 자”로 각각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등급 제11급을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세계의 손가락을 절단하였고 제2수지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준용등급 제11급 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는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0. 30. 이○○)
2. 답변서(1991. 10. 31.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6. 29. 이○○)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7. 3.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9. 27.)
6. 진단서 사본(1991. 6. 25. 순천향병원)
7. 소견서 사본(1991. 7. . 원처분청 자문의)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 소속 기계운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 3. 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제2, 4, 5수지 절단”으로 순천향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6. 25. 치료 종결되었는 바 순천향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좌측 제2수지 원위 지관절부 및 제4, 5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상으로 제2수지는 피부관 작성술, 제4-5수지는 중위지골 부위에서 절단술을 시행하였고 제2수지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58도, 제4수지 근위지관절 굴곡 불능” 및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 “좌수 제2수지 말절골 $\frac{22}{27}$ 잔존 절단장애 및 원위지 관절 운동범위 신전 35도, 굴곡 58도, 좌 제4수지 원위지관절 부위에서 절단, 제5수지 근위지 관절 부위에서 절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제2수지는 말절골의 말단, 제4수지는 중절골, 제5수지는 근위지관절 부위에서 각각 절단되어 제2수지는 “지골의 일부상실”, 제4수지는 “폐용”, 제5수지는 “상실”에 각각 해당되므로 원처분인 제11급 “엄지와 둘째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보다 상위등급 제10급 “엄지와 둘째손가락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상실할 자” 또는 “엄지와 둘째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이 폐용된 자”를 준용하여도 장해서열의 문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
보건